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 입주자 모집공고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 분양안내(http://yongmasanmoaelgaa.com)로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는 분양 상담 전화(☎1577-1709)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30.**입니다. (청약 자격 조건으로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중랑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자 격이 부여됩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 기간(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주택(제1항 제3호),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6호)	10년간 (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청약 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7호)	7년간 (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토지 임대주택(제1항 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 제 2항 제7호 가목)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 제2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제1항 제4호), 기타 당첨자(제3조 제 2항 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0.)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주민등록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신설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미성년자(세대주 및 청약 신청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 시행되어 제23조 2항 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 당첨 · 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서울시 중랑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 공급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 증명서상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단,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하여 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계속 거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불인정 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포함) 소유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충족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방식,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2, 제23조 제 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565호, 제3조,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적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미발생된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① 분양권 등부터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 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으로 보지 아니함.

가. 시행일('18.12.11) 전 공급계약된 건　　나. 시행일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다. 시행일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 시행일전 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 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 지급일
 ※ "공급계약-준공 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 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엑셀검색 결과상 동일 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② 분양권 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 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 지급일
-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 조제 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에는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 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 자격에서(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28 조제 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 : 무주택가구 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가구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공개됩니다.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 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 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분양 주택에 당첨된 후 부적격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위 공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른 사업 주체가 정하는 해당 분양 주택의 임의 공급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공급하는 것은 주택법령 위반에 해당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 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59 조제 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①세대주가 아닌 자 ②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③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청약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향후「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인천시(일부)·경기도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일부)·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 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청약 과열지구 :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전 지역(제외지역 : 김포시·파주시·연천군·동두천시·포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이천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모현면·백암면·양지면·원삼면(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두창리·맹리)), 광주시(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 수동면·조안면), 안성시(일죽면· 죽산면(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능리·장원리·두현리)), 삼죽면(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인천광역시 전 지역(제외지역:강화군·옹진군), 세종시(행복도시지역만 지정), 대전광역시(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오창읍·오송읍만 지정)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경기도(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 2만 지정)), 인천광역시(연수구·남동구·서구), 대구광역시(수성구), 대전광역시(동구·중구·서구·유성구),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 사실 등) 조회 방법 : 한국감정원 주택 청약 서비스(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58 조제 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 과열지구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2순위 접수 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되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018.05.04. 신설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신설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람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 **중복 청약 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단,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하며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에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합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주택법」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의 재당첨 제한 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1순위, 2순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주택법」및 관계 법령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2020년 4월 17일 개정)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 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 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지,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 제2항에 의거 **계약취소주택**(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해지된 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계약취소주택이 19세대 또는 19호 이하인 경우 사업 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①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②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③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가.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나.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 기간　　다.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제한 기간

■ 유의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	일반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 경기도·인천시 거주)	일반 2순위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시 거주)	당첨자발표	서류 제출 기간 (특별/일반 당첨자)	계약체결
일 정	8월 11일(화요일)	8월 12일(수요일)	8월 13일(목요일)	8월 14일(금요일)	8월 20일(목요일)	8월 21일(금요일) ~8월 25일(화요일)	8월 31일(월요일) ~ 9월 02일(수요일)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자격검증필요서류지참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계약서류 지참하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 소	▪ 사업 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감정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07-10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 견본주택) ※ 예비입주자의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애플앱스토어 어플도 이용 가능)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주택과-23000호(2020.07.2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5-14번지 일대

▣ 공급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층 5개 동, 총 243세대 중 일반공급 아파트 15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조합원공급 74세대, 임대주택 9세대, 보류지 1세대 제외)

▣ 입주 시기 : 2023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총 공급	특별공급					일반 분양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소계		
민영주택	2020000844	01	057.3700	57	57.3700	17.1600	74.5300	31.1100	105.6400	32.4300	19	2	2	4	1	9	10	0
		02	058.6600	58	58.6600	16.8300	75.4900	31.8100	107.3000	32.8500	10	1	1	2	-	4	6	2
		03	059.1700A	59A	59.1700	16.6800	75.8500	32.0800	107.9300	33.0000	2	0	0	1	0	1	1	1
		04	059.5000B	59B	59.5000	17.5500	77.0500	32.2700	109.3200	33.5300	12	1	1	3	0	5	7	2
		05	072.4600A	72A	72.4600	21.1900	93.6500	39.2900	132.9400	40.7500	1	0	0	0	0	0	1	0
		06	072.9700B	72B	72.9700	21.2100	94.1800	39.5700	133.7500	40.9800	4	0	0	1	0	1	3	0
		07	073.5800	73	73.5800	20.2900	93.8700	39.9000	133.7700	40.8400	1	0	0	0	0	0	1	0
		08	083.9100	83	83.9100	22.7000	106.6100	45.5000	152.1100	46.3900	50	5	5	10	2	22	28	6
		09	084.9000	84	84.9000	23.9100	108.8100	46.0400	154.8500	47.3400	60	6	6	12	2	26	34	8
	합 계										159	15	15	33	5	68	91	19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바로 위층을 최저층 의미함.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 세대)

주택형 (타입)	동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 (2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 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2020. 12. 17	2021. 04. 19	2021. 08. 17	2021. 12. 17	2022. 04. 18	2022. 08. 17	
057.3700 (57)	104동 1호 105동 1호	1층	1	176,575,200	197,524,800	374,100,000	74,820,000	37,410,000	37,410,000	37,410,000	37,410,000	37,410,000	37,410,000	74,820,000
		2층	1	181,342,400	202,857,600	384,200,000	76,84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76,840,000
		3층	2	186,062,400	208,137,600	394,200,000	78,84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78,840,000
		4층~9층	9	189,885,600	212,414,400	402,300,000	80,460,000	40,230,000	40,230,000	40,230,000	40,230,000	40,230,000	40,230,000	80,460,000
		10층이상	6	193,661,600	216,638,400	410,300,000	82,060,000	41,030,000	41,030,000	41,030,000	41,030,000	41,030,000	41,030,000	82,060,000
058.6600 (58)	102동 1호 103동 1호	1층	1	182,475,200	204,124,800	386,600,000	77,320,000	38,660,000	38,660,000	38,660,000	38,660,000	38,660,000	38,660,000	77,320,000
		2층	2	187,384,000	209,616,000	397,000,000	79,4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79,400,000
		3층	2	192,292,800	215,107,200	407,400,000	81,480,000	40,740,000	40,740,000	40,740,000	40,740,000	40,740,000	40,740,000	81,480,000
		4층~9층	5	196,257,600	219,542,400	415,800,000	83,160,000	41,580,000	41,580,000	41,580,000	41,580,000	41,580,000	41,580,000	83,160,000
059.1700A (59A)	105동 5호	2층	1	188,280,800	210,619,200	398,900,000	79,780,000	39,890,000	39,890,000	39,890,000	39,890,000	39,890,000	39,890,000	79,780,000
		3층	1	193,236,800	216,163,200	409,400,000	81,88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81,880,000
059.5000B (59B)	104동 2호 105동 2호	1층	2	189,980,000	212,520,000	402,500,000	80,500,000	40,250,000	40,250,000	40,250,000	40,250,000	40,250,000	40,250,000	80,500,000
		2층	2	195,124,800	218,275,200	413,400,000	82,680,000	41,340,000	41,340,000	41,340,000	41,340,000	41,340,000	41,340,000	82,680,000
		3층	2	200,222,400	223,977,600	424,200,000	84,84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84,840,000
		4층~9층	4	204,281,600	228,518,400	432,800,000	86,56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86,560,000
		10층이상	2	208,388,000	233,112,000	441,500,000	88,30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88,300,000
072.4600A (72A)	102동 3호	10층이상	1	248,319,200	277,780,800	526,100,000	105,220,000	52,610,000	52,610,000	52,610,000	52,610,000	52,610,000	52,610,000	105,220,000
072.9700B (72B)	103동 2호 104동 3호 105동 3호,4호	4층~9층	2	244,826,400	273,873,600	518,700,000	103,740,000	51,870,000	51,870,000	51,870,000	51,870,000	51,870,000	51,870,000	103,740,000
		10층이상	2	249,735,200	279,364,800	529,100,000	105,820,000	52,910,000	52,910,000	52,910,000	52,910,000	52,910,000	52,910,000	105,820,000
073.5800 (73)	105동 6호	10층이상	1	244,024,000	272,976,000	517,000,000	103,4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03,400,000
083.9100 (83)	101동 1호,2호 103동 4호	1층	2	247,611,200	276,988,800	524,600,000	104,92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104,920,000
		2층	3	254,266,400	284,433,600	538,700,000	107,740,000	53,870,000	53,870,000	53,870,000	53,870,000	53,870,000	53,870,000	107,740,000
		3층	3	260,968,800	291,931,200	552,900,000	110,58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110,580,000
		4층~9층	14	266,255,200	297,844,800	564,100,000	112,82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112,820,000
		10층이상	4	271,588,800	303,811,200	575,400,000	115,080,000	57,540,000	57,540,000	57,540,000	57,540,000	57,540,000	57,540,000	115,080,000
	104동 5호,6호 105동 6호	1층	2	252,661,600	282,638,400	535,300,000	107,060,000	53,530,000	53,530,000	53,530,000	53,530,000	53,530,000	53,530,000	107,060,000
		2층	3	259,458,400	290,241,600	549,700,000	109,940,000	54,970,000	54,970,000	54,970,000	54,970,000	54,970,000	54,970,000	109,940,000
		3층	3	266,255,200	297,844,800	564,100,000	112,82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112,820,000
		4층~9층	13	271,683,200	303,916,800	575,600,000	115,12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115,120,000
		10층이상	3	277,158,400	310,041,600	587,200,000	117,440,000	58,720,000	58,720,000	58,720,000	58,720,000	58,720,000	58,720,000	117,440,000
084.9000 (84)	102동 2호,3호 103동 2호,3호 104동 3호,4호 105동 3호,4호	1층	6	263,045,600	294,254,400	557,300,000	111,46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111,460,000
		2층	8	270,125,600	302,174,400	572,300,000	114,460,000	57,230,000	57,230,000	57,230,000	57,230,000	57,230,000	57,230,000	114,460,000
		3층	8	277,205,600	310,094,400	587,300,000	117,460,000	58,730,000	58,730,000	58,730,000	58,730,000	58,730,000	58,730,000	117,460,000
		4층~9층	33	282,869,600	316,430,400	599,300,000	119,86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119,860,000
		10층이상	5	288,533,600	322,766,400	611,300,000	122,260,000	61,130,000	61,130,000	61,130,000	61,130,000	61,130,000	61,130,000	122,26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 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 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 전용+주거 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 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 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 지정 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 지정 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 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 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 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 건설사업 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 사실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 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 일시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 일자	신청 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8.11 (화요일) (청약 Home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사업 주체 견본주택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7	58	59A	59B	72A	72B	73	83	84	합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	1	-	-	-	2	1	5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	-	-	-	1	1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	-	-	1	1	2
	중소기업 근로자	-	-	-	-	-	-	-	1	1	2

	장애인		1	1	-	-	-	-	-	1	2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50%)		1	1	-	1	-	-	-	3	3	9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인천시, 경기도 거주자(50%)		1	-	-	-	-	-	-	2	3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 공급(75%)	3	2	1	3	-	1	-	8	9	27
		일반공급(25%)	1	-	-	-	-	-	-	2	3	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시 거주자 우선공급		1	-	-	-	-	-	-	2	2	5
합계			**9**	**4**	**1**	**5**	**-**	**1**	**-**	**22**	**26**	**6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시 2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함. 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함

▣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공통사항)

구분		내용
세대당 1회한정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자격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자격 요건	공통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청약하여 당첨될**(예비포함)**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구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 3 및 제4호)

<table>
<tr><td></td><td></td><td>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td><td>청약
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부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예치금액 이상인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 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 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서울특별시</th><th>경기도</th><th>인천광역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00만원</td><td>25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3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d>7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 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 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 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 세대 등)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table>
<tr><td>배정세대수</td><td>• 15세대,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 : 전용 85㎡ 이하 주택건설량의 10% 이내 공급 / 분양가격 9억 이하</td></tr>
<tr><td>신청 자격</td><td>•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table>
<tr><th>추천기관</th><th>청약통장 구비 여부</th></tr>
<tr><td>장애인(서울시청 장애인자립 지원과), 국가유공자(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td><td>청약통장 필요 없음</td></tr>
<tr><td>장기복무 제대군인(서울지방보훈청),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국군복지단),
중소기업근로자(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td><td>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요건을 갖춘 분</td></tr>
</table></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td></tr>
</table>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 주체 및 전산 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배정 세대수	• 15세대,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0조 : 전체 건설량의 10% 이내 공급 / 분양가격 9억 이하**
신청 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택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 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또한,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 2018.05.08.」및 관련 법령에 따름.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위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 중 경쟁이 있는 경우「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거주지역에 따라 "배점 기준표"의 점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함(미달 시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①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②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국토교통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배 점 표				
평점 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 수(1)	40	미성년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 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자녀 4명	35	
		미성년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 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 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 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시·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등본상 등재)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배정 세대수	• 33세대,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1조 : 전용 85㎡ 이하 주택건설량의 20% 이내 공급 / 분양가격 9억 이하**
신청 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 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 이내(전 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한다)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자녀 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하여 산정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 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 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던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 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함.

• 우선 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25% 선정 시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 공급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 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 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 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 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 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 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3원 ~ 6,665,980원	6,226,342원 ~ 7,471,610원	6,938,354원 ~ 8,326,025원	7,594,083원 ~ 9,112,900원	8,249,812원 ~ 9,899,774원	8,905,541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 기준 120% 초과~130% 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배정 세대수	• 5세대,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6조 : 전체 건설량의 3% 이내 공급 / 분양가격 9억 이하**
신청 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 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 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 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원 중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름.

Ⅲ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모집공고일기준)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세대주가 아닌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본 아파트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저축 요건 및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시 **2년** 이상)에 거주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자격 확인 조회 요망. •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 조제 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 및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 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 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 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 청약 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구분 없이,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 소유 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 (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1) 청약예금 신청 주택 규모 변경(큰 주택 규모 청약 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부금 변경 (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저축 변경 (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1) 지역 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기타) 청약 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청약 접수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세대주 변경(모집공고 당일까지 변경 시 1순위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 때 청약 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 제한의 적용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 제한(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부적격당첨자 당첨 제한 기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이외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 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됨. • 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해서 90일 초과하여 머문 경우 해외 거주로 인정하고, 90일 이하 단순 해외여행, 어학연수, 출장 등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함.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일반공급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신청구분	신청 자격	거주구분
1순위	85㎡ 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 수에서는 제외됨(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 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 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85㎡ 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를 우선 선정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 수에서는 제외됨(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 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 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 과열지구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 불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8.07.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 자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 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 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위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한다. (동 규칙 제2조 제7호의 3)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 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2020.01.01. 개정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 산정 시에는 제53조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지 않음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미혼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④주택 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8호 [별표1의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등
① 무주택기간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분리 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확인) - 혼인관계 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점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 부양가족 산정 시) - 만 18세 이상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17점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총 점	84점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신청 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 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 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로 우선 공급 적용합니다.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 : 무주택가구 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가구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수도권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 하여 추첨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 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 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 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 접수(견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 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 제한 적용) 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 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57 조제 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4.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5. 주택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6.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 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매매 등 처분기준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①호와 제②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등본상 : 처리일
③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④ 제2조 제7호의 2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일
⑤ 기타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 주체로부터 제52조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해당 지자체의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⑨ 소형·저가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 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보고 분양권의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선택 품목에 대한 가격을 제외한 공급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 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 (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함)
 - 접수 결과 경쟁 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 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접수 결과 미달 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 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 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에 따른 계약자는 모두 분양권(주택 소유)으로 간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 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공급 주택

• 주택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③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서 사업 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④ 무허가건물이었으나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⑥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 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 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⑧「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 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IV 청약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 신청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신청대상자</th><th>거주 구분</th><th>청약 신청 접수일</th><th>신청 방법</th></tr>
<tr><td>특별공급</td><td colspan="2">기관추천/다자녀가구/
신혼부부/노부모부양</td><td>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td><td>2020.08.11(화요일)
(인터넷 청약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td><td rowspan="4">• 인터넷 청약 원칙 (PC 또는 스마트폰)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IBK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아래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차안내"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td></tr>
<tr><td rowspan="3">일반공급</td><td rowspan="2">1순위</td><td>해당</td><td>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td><td>2020.08.12(수요일)
(인터넷 청약 08:00~17:30)</td></tr>
<tr><td>기타</td><td>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td><td>2020.08.13(목요일)
(인터넷 청약 08:00~17:30)</td></tr>
<tr><td colspan="2">2순위</td><td>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td><td>2020.08.14(금요일)
(인터넷 청약 08:00~17:30)</td></tr>
</tabl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 함" 검색 (애플앱스토어 어플도 이용 가능)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홍보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불가)허용됩니다. (방문접수시간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나,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청약접수시간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 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 지역에 청약이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으로 접수해야 함. (타지역 청약 접수 시 부적격 처리됨)

※ 1순위 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2018.07.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는 1순위 "해당 지역" 접수일에 청약 가능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 (해당 지역으로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 지역(서울)" 1순위에서 청약 마감 시 기타지역(1순위) 및 후순위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상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라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 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안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 신청」⇒「APT 청약 신청」⇒ 청약 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 함"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 신청」⇒「APT 청약 신청」⇒ 청약 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 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약 신청」⇒「APT 청약 신청」⇒「Step 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 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 자격 검증(주택 소유 및 각종 청약 제한 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청약 자격 사전관리」⇒「세대 구성원 등록/조회」⇒「세대 구성원 동의」⇒「청약 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 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 자격 검증

※ 상기 접수 시간 17:30은 청약 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 청약 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에 입력하여야 함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 ~ 17:30으로 변경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 청약 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 접수 가능 시간 09:00~16:00)

구분		구 비 사 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 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일시: 2020.08.20. (목요일) • 확인 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

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 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 기간		2020.08.20(목요일) ~ 2020.08.29(토요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 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8.20(목요일) 08:00 (제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 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 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 제출 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 세대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합니다. (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 · 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 세대 등 확인)
- 자격 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제출 방법은 방문 제출이 아닌 우편(등기)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방법 및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0.08.21.(금요일)~08.25.(화요일) / 5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07-10)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0.08.26(수요일)~08.29(토요일) / 4일간 10:00 ~ 16:00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0)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무주택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포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의거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청약 당첨자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세대원의 경우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일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계약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임신 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 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 관계증명서	본인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임신 증명서류 또는 출산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 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 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 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 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단, 배 우자 분리 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 관계증명서	본인/자녀	만 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 관계증명서	본인 / 직계비속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1주택 실수요자 주택처분확약서	-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부 등본	해당주택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사업주체가요구하여인정하는서류	해당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위임장	당첨자(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 거주 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 항목 등 청약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 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소득증빙서류 (인터넷 청약 시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 증명서(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 표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 직장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 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 증명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② 재직 증명서(직인 날인)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 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 증명서상 근무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 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 지급 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원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 또는 법인)	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원본)	①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 등기부 등본(원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 증명서(직인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 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 증명원(신고소득 사실 없음)	①견본주택에 비치 ②세무서 또는 홈택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Ⅶ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0.08.31. (월요일) ~ 09.02. (수요일) 3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07-10)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만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 세대 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며,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 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가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 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휴대폰번호 및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리 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공사 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 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 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 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 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 주체에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 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 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 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		본인	인감 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입금증	○		본인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아파트 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KB국민은행	058101-04-375586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공급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공급대금(중도금, 잔금)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2동 10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21001홍길동'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자납제(유이자)" 사업장입니다.**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하므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 미알선 시에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는 각 회차별로 직접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스스로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수분양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대출에 따른 제반 비용 (보증 수수료, 인지대)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 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융 신용 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현금납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계약 해지(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당 사업지가 투기지역으로 세대당 1건(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융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 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자는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 개시 약 1~2 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 지정 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 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한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 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 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Ⅷ 추가 선택 품목계약

▣ 추가 선택 품목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공 품목, 납부 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57, 58, 59A, 59B	72A, 72B, 73	83, 84	비고
발코니 확장금액		42,648,000	45,539,000	49,932,000	
계약금(10%)	계약 시	4,264,800	4,553,900	4,993,200	
잔금(90%)	입주지정일	38,383,200	40,985,100	44,938,800	

■ 발코니 확장 시 무상 제공 품목

위치	발코니 확장 시 무상 제공 품목	주택형	비고
현관	푸쉬풀 디지털도어록	전평형	
주방	실크벽지	전평형	천정
	주방TV폰(10.2인치)	전평형	
	렌지후드 (침니형)	전평형	
	가스쿡탑 (법랑코팅쿡탑)	전평형	
	씽크대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전평형	
	복합오븐	전평형	
	음식물처리기	전평형	
거실, 침실, 드레스룸	실크벽지	전평형	벽, 천정
	화장대	83,84타입	침실1
	붙박이장	전평형	침실2 또는 침실3 (72A타입 거울미설치)
	월패드(고급형)	전평형	
욕실	욕실장	전평형	
	비데	전평형	부부욕실
발코니	전동식 빨래건조대	전평형	

※ 타입별 확장 선택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발코니 확장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에 따라 제공 품목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KB국민은행	058101-04-376992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혜림건설)

※ 상기계좌는 발코니 확장 납부 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계약 시 상기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 수납은 일체 하지 않음)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사업 주체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 주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 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신청서를 제출 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 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2동 10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21001홍길동'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및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품목은 개별선택하여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 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평면구성 및 제공 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 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 품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 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제공 품목, 유상옵션 품목, 전시 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유상옵션 품목, 전시 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 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어 가전제품(세탁기, TV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 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고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기본 선택 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 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본 아파트의 사업 주체에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및 색상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 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 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 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천장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커튼박스 깊이 축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 확장 세대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 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선택안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57	2실	거실 + 침실1(안방)	3,640,000	364,000	3,276,000	· 제조사 : LG전자
	4실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 3	5,200,000	520,000	4,680,000	
58	2실	거실 + 침실1(안방)	3,640,000	364,000	3,276,000	
	4실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 3	5,200,000	520,000	4,680,000	
59A	2실	거실 + 침실1(안방)	3,640,000	364,000	3,276,000	
	4실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 3	5,200,000	520,000	4,680,000	
59B	2실	거실 + 침실1(안방)	3,640,000	364,000	3,780,000	
	4실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 3	5,200,000	520,000	4,680,000	
72A	2실	거실 + 침실1(안방)	4,200,000	420,000	3,780,000	
	3실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4,500,000	450,000	4,050,000	
72B	2실	거실 + 침실1(안방)	4,200,000	420,000	3,780,000	
	4실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 3	5,300,000	530,000	4,770,000	
73	2실	거실 + 침실1(안방)	4,200,000	420,000	3,780,000	
	4실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 3	5,300,000	530,000	4,770,000	
83	2실	거실 + 침실1(안방)	4,300,000	430,000	3,870,000	
	4실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 3	5,700,000	570,000	5,130,000	
84	2실	거실 + 침실1(안방)	4,300,000	430,000	3,870,000	
	4실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 3	5,800,000	580,000	5,220,000	

■ **시스템에어컨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에어컨	국민은행	058101-04-376046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일반분양)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시) 102동 1001호 홍길동 : 1021001홍길동			

▣ **추가 선택 품목 공통 유의사항**

- 추가 선택 품목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 일정, 계약 내용, 납부 일정, 납부 계좌 및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추가 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유상 옵션 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 품목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 품목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 공사 관련으로 소요 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해제 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이며, 발코니 비 확장 세대는 선택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매립 냉매 배관은 거실(스탠드형) 및 안방(벽걸이형)으로 총 2개소에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 배관(거실, 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 냉매 배관(거실,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IX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명칭은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로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 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 정리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 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설치 위치 및 개소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및 단위 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단위 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후 도배 등 마감 부분에 한하여 재시공될 예정으로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 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견본주택,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 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합니다.

X 단지 여건 사항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심의를 거쳤으나, 추후 색채 및 경관조명은 인허가과정 및 도시의 트렌드 변화, 색채의 유형 변화 등에 의해 변경되어질 수 있으니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야간 경관조명에 의해 고층 세대는 눈부심 및 수면장애 등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모형 등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되며, 냉방은 거실, 안방에 계약자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냉매 배관이 설치됩니다.
- 전기 및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스계량기가 건축물 외벽에 설치될 예정이며 (단,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할 수 없는 경우에 실내에 계량기 설치) 위 시행규칙에 따른 원격검침 설치 시, 검침 데이터를 도시가스사에 제공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 동선 및 지하층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 출입구, 부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출입구 및 도로 등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구획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 저층부 마감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층별, 위치별 시공 부위에 따라 석재 또는 수성페인트) 시공되오니 청약 전 모형 또는 CG 등을 확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저층 세대의 경우 단지 이용자들에 의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은 건축심의, 인허가과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휀룸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불쾌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 시설물(쓰레기 분리수거장 4개소, DA, 자전거 보관소) 등은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DA가 설치되는 인근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방범상 취약 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DA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공용 홀 포함)의 마감 및 시설의 경우 견본주택과 홍보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설치되는 수량과 사양 및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및 추가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동의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등의 시설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주거동 1층이 필로티로 구성된 동은 입구 상부에 보행자 안전시설인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2층 세대는 빗물에 의한 소음, 시야 간섭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시설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공급단지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서비스 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는 주변 도로 및 인접 대지의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외부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 주거동 옥상은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 결과, 조경 시설물 변경에 따른 선형이나 포장 및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 및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색상 및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로 연결되는 보행자 출입로 및 1층 아파트 현관은 주변 대지 여건 및 디자인 특화에 따라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의 옥상 등은 개별 사적 소유물이 아니므로 1층의 녹지공간과 같이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고 공공의 목적에 반해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형할 경우 변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시설은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입면에 설치되는 수직 수평 돌출구조물(몰딩)에 접한 세대의 각 실에서의 조망권 침해,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직 수평 돌출구조물의 사이즈는 추후 임의 조정 시공할 수 있으며, 수평 몰딩의 경우는 돌출 부분에 부딪히는 빗소리 등에 의해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2층은 모든 동들이 연결된 구조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대지 형태, 주동 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247대)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제연휀룸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 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일부 동의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동 전면부로 소방차의 진입이 불리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 같은 통신 설비는 각 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차후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 이동통신 중계 장치 설비는 각 동에 설치되며, 이동통신 설비 안테나는 각 동 지붕 층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차후 소음 및 진동 또는 전파의 교란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향후 본공사 진행 시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및 설치 개소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중계 장치 설비, 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 설치 위치 등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부 및 옥탑 층에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소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행자도로와 연계된 대지 내 전면보도는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일체 할 수 없고,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 출입구 및 주차장 램프에 위치한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은 단지 출입 및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101동 후면, 102동 측면 103동 후면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3동 지하 1층에 주민운동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5동 전면에 1층에 경로당, 2층에는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1동 후면, 102동 전면, 103동 측면, 104동 전면, 후면, 105동 후면에 커뮤니티 마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후면, 102동 전면, 103동 측면, 104동 전면, 후면, 105동 후면에 휴게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의무시설로서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일부 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상가 등의 단지 시설물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방범상 취약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보행자 출입구의 형태 및 구조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출입문 크기,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른 주 출입구 차선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일부 세대에서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당 아파트 사업 주체 및 중랑구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중 우회도로 6M와 현황도로의 단지 내 보행통로는 단지 내 주민과 주변에 인접하는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보도입니다.

■ 단지 명칭 관련 유의사항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설치되는 브랜드 로고의 위치에 대하여 개인 취향 등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 환경디자인

- 단지 내 조경, 동 출입구 및 각종 시설물,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외곽 주변 도로 및 주변 현황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 출입구, 차량 진·출입으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토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미술 장식시설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 외관(지붕, 옥탑, 동 출입구, 창틀 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 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사업부지 주변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도로 등은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조경석, 보강토 블럭쌓기포함) 등은 그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및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 여건(도로 현황, 레벨 현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거주예정가구의 취학연령 인구의 학교 배정은 해당 관청의 예산사정,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 초등학교 해당 통학구역은 면중초등학교이며, 학교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 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dbedu.sen.go.kr/)'통학구역 조정' 참조
· 중 학 교 :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dbedu.sen.go.kr/)'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참조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곽 도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높이와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방음벽 및 가드레일 등 포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입에 교통정체 및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도로(차도 및 보도)의 레벨과 폭 및 차선수는 세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차량 진입도로는 주 출입구에 위치하오니 차량 진·출입에 충분히 검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 이상의 대지를 합필, 변경하는 민간택지의 특성상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 정리가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시 확정측량 성과에 따라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사업부지 주변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모형물,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Ⅺ 설계 관련 주요 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 세대 및 마감재

1.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2.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후 도배 등 마감 부분에 한하여 재시공될 예정으로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① 욕실장 및 욕실 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②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④ 주방가구 하부 및 붙박이장 하부는 별도 마감재(마루)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5.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 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본 공사 시 가스 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9.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 창호 디테일, 크기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1. 본 공사 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12. 본 공사 시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13.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14.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 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환기장치가 실외기실 상부에 천장 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16. 안방 및 침실 등 벽면에 각 타입별로 상이하게 통신단자함, 분전반이 설치 예정입니다.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의 마감되지 않습니다.)
18. 급수, 급탕 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분배기 하부는 별도의 바닥 마감이 되지 않습니다.)
19. 단위 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20.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 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1. 주방가구 하부장 무늬 패턴은 본 공사 시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 세대 내부 포인트 타일 요철로 인해 줄눈 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 주방은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24. 단위 세대 창호 방향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25.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6. 단위 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7. 각 세대 일부 발코니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배관이 노출되며, 각 세대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8.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9. 가스 배관이 주방 상부 장으로 지나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주방 상부 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0.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31.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 및 마루 마감재는 현재 가구 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32. 본 공사 시,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33. 세대 도어(현관 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34. 소방법에 의해 세대에 완강기(3~10층)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5. 골조와 조작 벽체 등의 이질 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6.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37.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의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38.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39. 58타입 미확장 시 침실2 창호는 전창으로 시공됩니다.
40. 72A 타입 침실2, 거실 복도 이중창호 하부높이는 인허가 기준으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1. 세탁실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2. 세탁실,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결로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43.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 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44. 세대 현관문 위치 이형 타입, 반폐쇄형 창호 및 해당동

1)세대 현관문 위치 이형 타입 및 해당동

주택형	해당 동, 층수, 라인	해당 동호수	위치	비고
83	104동 전층 5호라인	104동 205호~1505호	현관	현관문 위치 다름
84	102동 전층 2라인,3라인	102동 202호~1102호 / 203호~903호		

2)반폐쇄형 창호 설치되는 이형 타입 및 해당동

주택형	해당 동,층수,라인	해당 동호수	위치	창호규격
83	101동 4층,5층 세대 1호라인,2호라인	101동 401호,402호,501호,502호	침실2	1.8*1.4 (반폐쇄형 창호)
84	102동 5층,6층 세대 2호라인,3호라인	102동 502호,503호,602호,603호		
84	103동 4층,5층 세대 2호라인	103동 402호,502호		
84	103동 6층,7층 세대 3호라인	103동 603호,703호		
84	104동 8층,9층 세대 3호라인,4호라인	104동 803호,804호,903호,904호		
83	104동 8층,9층 세대 5호라인,6호라인	104동 805호,806호,904호,905호		
84	105동 5층,6층 세대 3호라인	105동 503호,603호		
84	105동 7층,8층 세대4호라인	105동 704호,804호		
83	105동 7층,8층 세대6호라인	105동 706호,806호		

■ 세대/규격

1.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 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혹은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 혹은 다섯째 자리에서 절사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 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공/전시 품목

1.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과 무관합니다.
4.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합니다.

■ 견본주택 고지사항

1.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 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및 단위 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3.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4.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5.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 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한 모델하우스 전용이며, 본 시공과 무관합니다.
7.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및 시공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커뮤니티 시설

1. 주민공동시설은 공동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 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부대 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부대 복리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부대 복리시설은 사업 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5. 부대 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사업 주체가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주민공동시설은 각 동에서 진입하는 거리와 진입 위치에 따라 다소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8.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부대 복리시설, 경로당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10. 분양 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 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장애인 관련 법규, 인증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부대 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게 입주 지원 및 하자 관리 업무를 위한 단지 내 시설(주민회의실, 작은 도서관, 경비실, 경로당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제공하여야 한다.

Ⅻ 기타 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20-101-0005700 호	육백칠십오억이백칠십이만 원정 ₩67,502,720,000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 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주택도시 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 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 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 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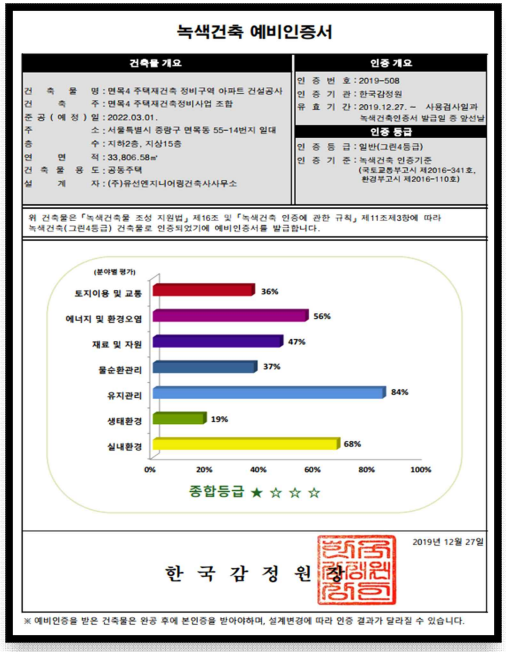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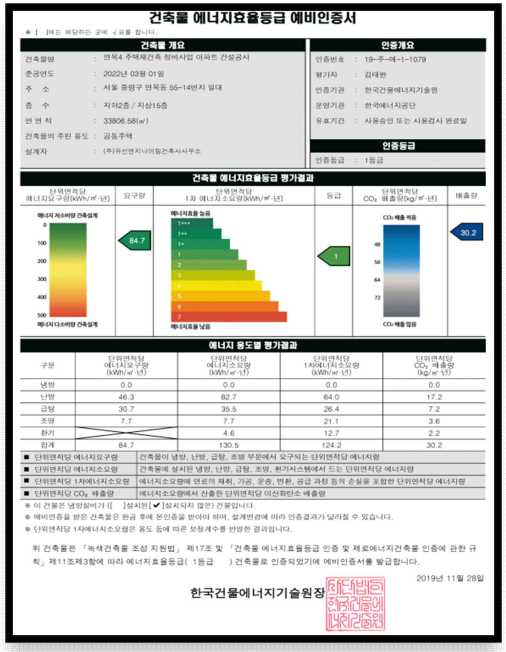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	비고
건축 감리	㈜목양 종합건축사사무소	926,796,000원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감리	㈜아이비엔지니어링	226,600,000원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사업 주체 및 시공사

사업주제명	시공 회사명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인등록번호 : 260271-0002520)	혜림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200111-0257753)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 안내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07-10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 견본주택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하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정보를 안내하오니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yongmasanmoaelgaa.com

▣ 분양문의 : ☎ 1577-1709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이 우선함.)